





범주: 학생 발행: / /15 번호: A-411  
 제목: 행동위기 완화/중재 및 911 연락 페이지: 3중1

IV. 신고 절차

- A. 학교장/대리인은 911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응급 접수 센터(EIC)에 전화 (718) 935-3210 번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- B. 학교장/대리인은 모든 학교 관련 사건(911 신고가 이뤄진 사건 포함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24 시간 이내에 온라인 사건발생 리포트 (OORS Report)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C.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(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:OSYD)에서는 OORS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헬프데스크 운영시간은 월-금요일, 8:00 AM-5:00 PM 입니다. 헬프 데스크에 연락하려면 (718) 935-5004 번으로 전화하여 OSYD Web Support 로 연결을 부탁드립니다.
- D.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-820 및 가정 교육권리 및 비밀보호법(FERPA)에 의거하여 자녀의 사건발생 리포트 사본을 요청하고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.

V. 공고

- A. 각 학교의 위기중재팀은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 이전에 전 교직원 및 비교직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.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반드시 본 규정 및 학교의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져야 합니다.
- B.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매년 10 월 31 일까지 이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졌음을 해당 학교의 학교 및 청소년 종합 발달계획에 인증해야 합니다.
- C. 본 규정 및 위기 완화 계획에 명시된 규정 및 절차들은 10 월 31 일까지 교내 상주 학교 안전요원 레벨 III/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한 학교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져야 합니다.
- D. 본 규정의 사본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.

VI. 문의

본 규정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:

<p><u>전화:</u> 212-374-5501</p>	<p>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– Room 218 New York, NY 10007</p>	<p><u>팩스:</u> 212-374-5751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